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선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021
----------	-------

발의연월일 : 2026. 4. 1.

발 의 자 : 박선원 · 유용원 · 박지원  
윤건영 · 조배숙 · 부승찬  
김병주 · 한준호 · 김원이  
이개호 · 이원택 · 신정훈  
김영배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은 특수임무수행자를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수행하였거나 관련 교육훈련을 받은 자로 한정하고 있음. 이로 인해 2004년 법 제정 당시 국가인권위원회가 강조한 ‘과거 군 특수임무 수행에 따른 희생에 대한 국가 책임’이라는 입법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특히 해군의 경우, 1971년 「해군첩보부대령」 제정 이전에는 별도의 첩보부대 교육체계가 없어 특수임무 무장공작원을 해군 UDT 교육 훈련 과정을 통해 양성해 왔음. 당시 대북 첩보 및 공작 임무는 실질적으로 UDT 요원이 수행하였으며, UDT 교육훈련은 특수임무 수행을 위한 필수 과정이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UDT 복무 중 해군 첩보부대로 인사 발령된 경

우에는 유공자로 인정되는 반면, 동일한 교육훈련을 이수하고 첩보임무 수행을 전제로 UDT 부대에 잔류한 요원들은 형식적인 편제 기준만으로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이로 인해 1955년부터 1971년까지 양성된 UDT 무장공작원 중 상당수가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이에 1948년 8월 15일부터 1971년 12월 31일 사이 해군 UDT에서 특수임무 관련 교육훈련을 받은 자를 법률상 특수임무수행자의 범위에 명확히 포함시켜, 실질적 임무 수행과 희생에 부합하는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2호).

법률 제 호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자로서”를 “자 및 1948년 8월 15일부터 1971년 1월 31일 사이에 해군 UDT에서 특수임무 관련 교육훈련을 받은 자로서”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